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http://www.lgchem.com)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께,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LG화학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5일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공시를 통해 안내 드렸습니다만,

주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자 각 안건에 대해 참조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 혹은 논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사 IR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주주 여러분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LG화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4. 2. 26.

LG화학  
대표이사 신 학 철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

##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기 공시된 재무제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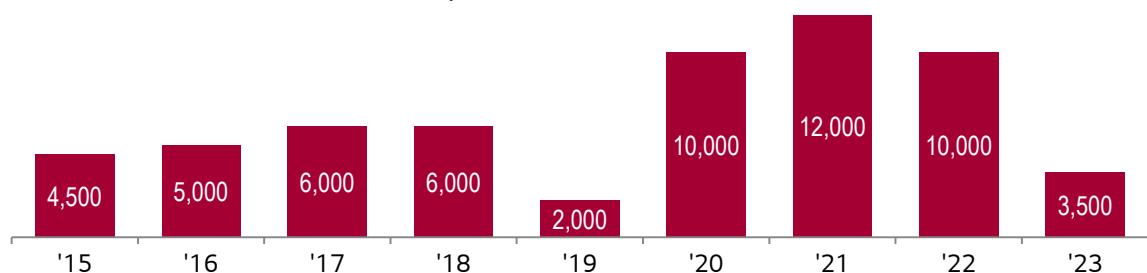
현재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둘째 주, 외부 감사가 완료된 최종 감사보고서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배당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당사 배당정책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향후 3년간(FY 2023 ~ FY 2025)은, 3대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을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서, 동 기간동안 연결 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 기준 배당성향 20%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배당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1.3조원에서 배당성향 20.5%인 보통주 1주당 3,500원, 우선주 1주당 3,55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 예정입니다.

올 한해도 작년과 같이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전지재료를 포함한 3대 신성장 동력 육성에 힘을 쏟아온 당사는 올해가 여러 사업에 있어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효율성 제고, 고부가 제품 및 신성장 동력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개선된 수익성 달성을 동시에 재무건전성 유지하여, 향후 더 큰 성과로 주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DPS) 추이 (보통주)

단위: 원



※ '23 배당금은 이사회 승인 내용이며,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배당정책 관련 상세 설명자료는 DART 공시 및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http://www.lgchem.com)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으로서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배당금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신규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정관에 의해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 이긴 하였으나, 이미 결산기 말일 전에 배당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며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안에 따라 배당기준일 관련된 정관 조항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결산기 말일'로 되어 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면, 배당금 결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전년 회계연도의 배당금이 결정된 이후에, 투자 관련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 되면,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 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그간의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정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상세 내용은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정관 변경 조항
배당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법 유권해석 사항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li><li>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전환사채 등 관련 기준일 규정 정비</li></ul>	제35조 등 제10조의2 등
주주명부 폐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주주명부 폐쇄절차 관련 규정 삭제</li></ul>	제13조
감사위원회 선임 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관련, 전자투표 채택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위해 정관 변경</li></ul>	제29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구 정비</li></ul>	제31조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

## [정관 변경 상세 내용] 배당기준일 관련

-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이사회에서 지정할 수 있게 변경하여, 배당금 결정 이후로 배당기준일 설정 가능

현행	변경(案)
<p><b>제35조 (주주배당금)</b></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지급한다.</p>	<p><b>제35조 (주주배당금)</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사회는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b>제35조의1 (중간배당)</b></p> <p>① 이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배당률을 적용한다.</p>	<p><b>제35조의1 (중간배당)</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삭제)</b></p> <p>④ (현행과 같음)</p>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

## [정관 변경 상세 내용] 배당기준일 관련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전환사채, 신주 등의 관련 규정 정비

현 행	변 경(案)
<p><b>제10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오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오천억원 범위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p> <p>⑥ 제11조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10조의2(전환사채의 발행)</b></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b>제10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천오백억원 범위내에서 보통 주식, 이천오백억원 범위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p> <p>⑥ 제11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10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삭제)</u></p> <p>⑥ (현행과 같음)</p>
<p><b>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b></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b>제10조의4(동등배당)</b></p> <p>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p>

## [정관 변경 상세 내용] 주주명부 폐쇄절차 관련

- '19년부터 주권 전자등록제도 시행 따라, 관련 내용 변경하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내용 반영

현 행	변 경(案)
<p><b>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p> <p>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말일의 익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그 말소를 정지한다.</p> <p>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3조 (기준일)</b></p> <p>① <u>(삭제)</u></p> <p>② <u>(현행과 같음)</u></p> <p>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 [정관 변경 상세 내용] 감사위원 선임 정족수 및 기타 관련

-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른 변경 및 문구 정비

현 행	변 경(案)
<p><b>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b></p> <p>①~⑤(기재 생략) <u>(신설)</u></p>	<p><b>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b></p> <p>①~⑤(현행과 같음)</p> <p>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b>제31조 (이사의 퇴직금)</b></p> <p>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p> <p>① 이사 ② 제1항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p>	<p><b>제31조 (이사의 퇴직금)</b></p> <p>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p> <p>1. 이사 2. 제1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p>
[신설]	<p><b>부칙(2024.03.25)</b></p> <p>제1조(시행일)</p> <p>이 정관은 2024년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내용은 2024년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p>

## ■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2024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동석 사내이사를 재선임 하고자 합니다.

차동석 사내이사 후보는 '14년 서브원 CFO, '18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FO를 거쳐 '19년 9월부터 LG화학 CF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당사 사업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간 당사의 3대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과 관리와 Risk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 주요 약력 등 : 1963년생 / 남성

'08 ~ '10 : (주)엘지 재경팀장

'11 ~ '13 : (주)엘지화학 정도경영TFT 진단1담당

'14 ~ '18 : (주)서브원 CFO

'18 ~ '19 :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FO 兼 (주)서브원 CFO

'19 ~ 현재 : (주)엘지화학 CFO

변경 후 이사회 구성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기타비상무이사 (1인)	권봉석	남성	2022.03 ~	'25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사내이사 (2인)	신학철 차동석	남성 남성	2019.03 ~ 2020.03 ~	'25년 정기주주총회까지 '27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4인)	조화순 이현주 천경훈 이영한	여성 여성 남성 남성	2022.03 ~ 2022.03 ~ 2023.03 ~ 2024.03 ~	'25년 정기주주총회까지 '25년 정기주주총회까지 '26년 정기주주총회까지 '27년 정기주주총회까지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http://www.lgchem.com)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2024년 3월 임기 만료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을 대신하여,  
이영한 후보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영한 후보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세무회계 전공 교수 및 세무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 및 산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 세무,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간의  
공인회계사 경험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위원 등 정부 부처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계, 세무, 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 자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주요 약력 등 : 1973년생 / 남성

'96.12 : 공인회계사

'17 ~ '19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18 ~ '22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06 ~ 현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2 ~ 현재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 후보자의 등기임원 겸직 현황 :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 (임기만료일 : '26.03)

변경 후 감사위원회 구성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감사위원회 (4인)	조화순 이현주 천경훈 이영한	여성 여성 남성 남성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영한 감사위원이 회계·재무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됨

073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82-2-3773-1114 [www.lgchem.com](http://www.lgchem.com)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대비 감소한 수준인 70억원으로 승인 받고자 합니다.

재무성과 등 계량지표와 핵심과제 평가,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기대 사항 이행 정도 평가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의 실제 지급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최대 규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재무성과의 목표 미달성으로,  
금년도 지급될 성과인센티브의 감소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금번 보수한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80억원의 한도 내에서 5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실제 보수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공시해 오고  
있으니, 2023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은 2023년도 반기 보고서에서, 2023년도 연간 집행 내역은  
2024년 3월 셋째 주 공시 예정인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 보수한도 승인 금액 및 집행 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보수한도 승인금액 (이사 수)	80억원 (7명)	70억원 (7명)
실제 집행금액	51.3억원	-